

의 정 정 보

2006 - 4 3. 30

I.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비 산출 결과	1
II.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질의회답내용	5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9

I.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비 산출결과

□ 의정비 산정방향

-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의회의 주요역할이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기관 견제기능인 점을 고려하여 산정
-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해당지역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국 가구당 월평균가계수지와 해당지역을 비교하여 가중치로 반영하며, 의정비 상한액은 해당지역의 가구당 연평균 가계소득의 200% 이내로 제한
-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역물가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물가수준 반영
-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반영

□ 의정비 산정기준

- 월정수당 총액은 주민 의견수렴 기능(50%)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견제기능(50%)으로 구분하여 산정
 - 주민의견수렴 기능은 국회의원 대비 주민수비율(0.4384) × 국회의원 수당($81,492$ 천원)으로 산정

- 국회의원 대비 주민수 비율 = 국회의원 299/광역의원 682명
- 집행부견제 기능은 시의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 주상대자인 부서장(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평균 연봉액으로 산정
 - 서울시의 경우 선출직인 시장을 제외한 4급이상 간부공무원 (부시장 82,579천원, 4급 64,041~37,221천원 평균)의 평균연봉액으로 함
 - 평균연봉액 : $(82,579 + 37,221) / 2 = 59,900$ 천원
- 소득수준은 전국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대비 해당지역 가계 소득으로 산출
 - 서울지역 가구당 평균 가계소득 : 연 37,398,708원(월 3,116,559원)
 - 전국 가구당 평균 가계소득 : 연 35,037,480원(월 2,919,790원)
 - 해당지역의 가계평균소득이 전국평균가계소득보다 높을 경우 가중치를 1.0으로 함
 - 상한액은 지역주민 평균소득액의 200% 이내로 함 : 시민단체 제안 (의정비 상한액 $\leq 74,797,416$ 원 $=37,398,708$ 원 $\times 200\%$)
- 물가수준은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해당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로 산출
 - 서울 소비자물가지수(119.3)/전국 소비자물가지수(117.8)=1.013
- 자치단체 재정여건은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를 함께 고려하며, 두 지수의 평균치가 1을 상회하는 서울시의 경우 가중치를 1.0으로 함

- 2006년 재정력 : (재정력지수 1.088+재정자립도 0.943)÷2=1.016

□ 의정비 산출

의정비 산식 = 월정수당×12개월+의정활동비 ≤서울지역 평균가계소득 200%

$$= [\{ (지방공무원 부시장~4급 연봉액 평균 \times 0.5) + 국회의원수당 \times (국회의원수/광역의원수) \times 0.5 \} \times (서울지역 소비자 물가지수/전국 소비자물가 지수) \times (서울시 재정력 가중치 1.0) + 정액급식비] / 12 \times 12개월 + 의정활동비 \leq \text{서울지역 평균가계소득 } 200\% (7,479\text{만원})$$

의정비 금액 = $[\{ (59,900 \times 0.5 + 81,492 \times 0.4384 \times 0.5) \times 1.013 \times 1.0 \} + 1,560] / 12 \times 12개월 + 18,000 \div 417\text{만원} \times 12개월 + 1,800\text{만원} \div 6,804\text{만원}$

※ 부시장 연봉 및 국회의원 세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부시장 ~ 4급 과장		국회의원 세비 기준			
구 분	금 액 ①	구 분	금 액 ②	국민수 비율 ③	산출금액 ④
연 봉	59,900	연 봉	81,492	0.4384	35,726
		평 균 액 ⑤=(①+④/2)			
		47,813			

▶ 정액급식비 : 연 1,560천원 (월 130천원)

- ▶ 국민수 비율 : $\{(\text{국민 총인구}/\text{전국 광역의원수}) \div (\text{국민 총인구}/\text{국회의원수})\} = \text{국회의원수 } 299 / \text{광역의원수 } 682\text{명}$

□ 월정수당 액수 및 총지급액 산출

(단위:만원)

가 중 치 ⑥	월 정 수 당 ⑦			의정활동비 ⑨	의정비 연액 (⑦×12+⑨)
	계	(⑤×⑥)/12	정액급식비		
• 물가지수 1.013 • 소득지수 1.067⇒1.0 • 재정력 1.016⇒1.0	417	404	13	1,800	6,804

※ 가중치 계산(통계청 또는 행정자치부 발간자료)

- ▶ 2005년 소비자 물가지수 : 서울지역/전국 소비자물가
- ▶ 2005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 서울지역/전국 가계소득
- ▶ 2006년 서울시 재정력 : $(\text{재정력지수 } 1.088 + \text{재정자립도 } 0.943) \div 2 = 1.016$

□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결정 금액 : 월 417만원

○ 월정수당 산출금액 : 417만원

- $48,435\text{천원} \div 12\text{월} = 4,036.25\text{천원} + \text{정액급식비 월 } 130\text{천원} = 4,166.25\text{천원}$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별도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기초의회 의정비 확정내역

기 초 의 회	연 봉	월 급여	비 고
충남 홍성군의회	26,400,000원	2,050,000원	
대전 유성구의회	25,200,000원	2,100,000원	
충북 음성군의회	24,380,000원	2,032,000원	
전남 순천시의회	22,260,000원	1,855,000원	
전남 여수시의회	27,410,000원	2,285,000원	
전남 담양군의회	24,000,000원	2,000,000원	

II.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질의회답내용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회답한 내용입니다.

① 전광 소재 어깨띠 사용 등에 관련

【질 의】

○ 저희 회사에서는 금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하여 선거용 어깨띠를 신소재를 이용하여 종래의 어깨띠보다 활성 되는 발광소재를 이용하여 밤에도 출마자의 성명과 정당, 홍보 글씨를 선명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후보자에게 납품하고자 합니다. 위 후보자용 새로운 홍보 어깨띠를 홍보물로 사용할 경우 현재의 시점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혹은 사용 가능한지를 회신 바랍니다.

1. 후보자 본인의 어깨띠 제작 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장치

2. 후보자 본인의 승용차 좌·우 벽면에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장치

3. 후보자 본인의 승용차 보닛 또는 트렁크 위에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장치
4. 후보자 또는 지정 선거운동 차량(승합차)에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장치
5. 후보자 또는 지정 선거운동 차량(트럭)에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발광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장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 내지 5>에 대하여

- 귀문의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전자 발광 소재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위한 설비를 하는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밖의 차량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별도의 장치를 제작·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1조·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질의회답

【질 의】

○ 5월31일 선거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제79조)을 하는 때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녹음·녹화기의 규격은 얼마인지?
2. 점보트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보트론은 차량대수에 포함이 안되고 녹음·녹화기로 보는지?
3. 연설·대담용 차량에 부착된 오디오기기(녹음기)를 사용하여 정지된 상태 또는 이동중에 로고송 방송 및 연설·대담이 가능한지 여부?
4. 연설·대담용 차량과 떨어져 휴대용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5. 사회자가 휴대용확성기 사용이 가능한지?
6.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할 수 있는바, 간판·현판을 대신하여 현수막 3개를 외벽에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 변】

1. <문 1·2>에 대하여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3제곱미터 이내이며,

- 이 경우 녹화기와 자동차가 합성체로 된 점보트론은 녹화기로 보아 차량대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문 3>에 대하여

-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중이거나 이동중 연설·대담을 하는 때(연설·대담을 위하여 후보자나 연설원이 연설·대담장소에 있거나 연설·대담용 차량에 타고 있는 때를 포함함)에 귀문의 오디오 기기(녹음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항에 규정된 음악 등을 방송·방영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는 없음.

3. <문 4>에 대하여

- 휴대용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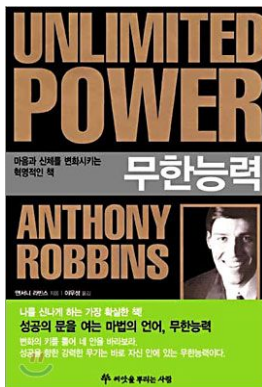
4. <문 5>에 대하여

- 사회자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없으나 후보자를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5. <문 6>에 대하여

- 무방할 것임.

<부 록> : 행복한 책 읽기



- ❶ 도서명 : 무한능력
- ❶ 저자명 : 앤서니 라빈스
- ❶ 출판사 : 씨앗을뿌리는사람
- ❶ 출판년 : 2005년
- ❶ 페이지 : 496 쪽

더 나은 삶을 꿈꾸는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무한능력』을 읽으면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삶을 성취할 수 있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인생 코치 앤서니 라빈스의 두 번째 선물 『무한능력』은 마음과 신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책이다.

앤서니 라빈스는 마음에 내재한 무한한 능력을 끌어냄으로써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성취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수백만 명에게 증명해 보였다. 그는 정치 지도자, 올림픽 선수, 프로 운동선수, 유명 배우, 직장인,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 가르쳐 왔다.

『무한능력』에는 앤서니 라빈스가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변화와 성공의 신과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변화와 성공을 이끄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감정의 힘, 재정적 여유, 리더십, 자신감,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협력관계를 성취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무한능력』의 초판이 출판되기 불과 3년 전, 앤서니 라빈스는 198cm가 넘는 큰 키에 평범한 26세의 청년이었다. 그는 10평 남짓한 독신자 아파트에 살면서 육조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다. 몸도 정상 체중보다 훨씬 비만인데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고, 장래조차 불확실해서 늘 불행감에 젖은 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앤서니 라빈스는 마음속에 숨어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견했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켜 탁월한 결과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 순식간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냈다.

그는 지금 바닷가에 위치한 마치 성 같은 수백만 불짜리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인간의 변화와 성공, 성취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교육시켜 그 진가를 입증하고 있으며, 최고의 인생 코치로 찬사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세미나에는 프로 운동선수, 정치가, 포춘 500대 기업의 임직원, 더 나아가 가정주부와 어린이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무한능력』은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와 함께 미국에서 줄곧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13개국에 번역 출간되어 읽히고 있다.